

CONNEXIS 연결 시스템 약정

본 약정은 비엔피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행”)이 제공하는 Connexis 연결 플랫폼(“시스템”)에 대한 접속권의 제공 및 유지 보수 등 관련 서비스(“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상기 시스템은 파일이나 데이터를 고객과 은행 간에 전송, 처리 혹은 교환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 플랫폼이다.

본 약정은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Connexis 연결 신청서 및 Connexis 연결 실행양식 등(“약정문서”)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고객은 약정문서가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적용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1 조: 시스템 접속; 서비스; 등록된 계좌

1.1 은행은 고객에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접속절차를 제공하고 고객의 시스템 접속과 이용을 지원하는 관련 사용자 문서도 제공한다.

1.2 은행이 시스템 접속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은 은행과 해당 네트워크 연결테스트(연결 테스트 후 파일 포맷 포함)를 통과하여야 한다.

1.3 서비스는 이를 적법하게 제공 가능한 국가에서만 제공된다. 고객은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제약조건을 살펴보고 준수할 책임이 고객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그 대표자(제 2.1 조에 정의)가 이를 준수한다.

1.4 은행은 고객에게 제 5 조에 보다 상세하게 기재된 바와 같은 키 및 접속수단(“접속키”)도 제공한다.

1.5 서비스는 Connexis 연결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된 계좌(Registered Accounts)에 대하여 제공된다. 고객은 Connexis 연결 신청양식으로 은행에 등록된 계좌의 수정명단을 제출함으로써 등록된 계좌의 명단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명단은 은행이 처리하여 수락한 때 효력을 가진다.

1.6 고객 관련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계좌의 등록은 해당 계열회사가 Connexis 연결 신청서의 작성을 비롯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제공을 전제로 한다.

1.7 은행은 등록된 계좌를 수락, 배제 혹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 조: 진술과 약속

2.1 고객을 대리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임직원 및 대리인(“대표자”)이 본 약정에 규정된 합의와 조건 및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속절차와 문서를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고객은 대표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 활동과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2 고객은 은행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한다:

(a) 고객은 은행이 규정한 사양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b) 고객은 은행이 정한 보안절차를 준수하며, 제 3 자의 서버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제 3 자가 명시한 보안절차를 준수한다;

(c) 고객은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대표자가 다음과 같이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i) 적용법률, 규칙이나 규정에 반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나 통신을 발송하거나;

(ii) 제 3 자의 저작권 자료나 상표를 적절한 허가 없이 사용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제 3 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하는 활동이나 행위에 참여하거나;

(iii) 적용법률,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 보호권리를 위반하게 될 활동이나 행위에 참여하거나;

(iv) 타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외설적인 자료를 발송, 우송 혹은 주관하거나 또는 유사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v) 파일의 머리말, 답장메일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전송정보를 고의적으로 생략, 삭제, 위조 혹은 허위 진술하거나;

(vi) 불법적인 목적으로, 관련 법률, 규칙, 제재조치 또는 규정이나 해당 서비스 제공자나 웹사이트 등의 규칙을 위반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vii) 제 3 자로 하여금 위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허가.

제 3 조: 수수료와 비용

3.1 고객은 시스템과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은행이 고객과 상호 합의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다.

3.2 고객은 본 약정상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기타 지급액을 고객이 현재 또는 향후 은행에 보유하는 계좌로부터 인출할 권한을 은행에게 부여한다.

제 4 조: IT 시스템

4.1 고객은 시스템의 접속과 운영에 필요한 IT 하드웨어와 장비, 브라우징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연결(통칭하여, “IT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고객의 IT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2 고객은 IT 시스템의 보안과 IT 시스템과 시스템의 사양과의 호환성을 보장한다. 고객은 시스템에서 전송된 정보가 노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효율적인 보안절차와 기타 보호 메커니즘을 실시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3 고객은 자신의 IT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며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저해하는 바이러스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한다. 고객은 고객에 의한 본 제 4 조의 위반으로 야기되는, 시스템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역기능, 지연이나 문제로 인하여 은행에 초래되는 비용, 경비, 청구, 채무,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에 손해배상하고 은행을 면책하기로 한다.

4.4 은행은 고객의 IT 시스템에 존재하는 오류나 하자를 치유하거나 또는 관련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5 고객은 시스템에 접속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4.6 인터넷과 전화 통신 등 시스템의 이용에 관련된 경비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5 조: 시스템 접속키 및 보안

5.1 시스템 접속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접속키의 이용이 필요하고 시스템 접속키는 고객의 신원 코드, 패스워드, 디지털 키 및 디지털 인증서 등 은행이 규정하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시스템 접속키”).

5.2 고객은 시스템 접속키와 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시스템이나 시스템 접속키의 무단 이용이나 부정 이용을 방지한다.

5.3 고객은 암호와 시스템 접속키의 보관, 통제, 이용과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5.4 고객은 시스템 접속키의 분실 또는 오용에 관하여 은행에 즉시 보고하기로 약속한다. 고객이 이를 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고를 받는 즉시, 은행은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시스템 접속키를 변경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고객은 해당 보고와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지원과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5.5 고객은 다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할 권리를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이전, 제공 혹은 양도하거나 또는;
- 제 3 자에게 시스템상의 서비스, 접속키나 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나 문서에 대한 접속을 제공.

제 6 조: 기술지원

6.1 은행은 고객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곤란을 겪을 경우 은행의 업무시간 중에 고객에게 전화지원(또는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이 제공될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 기준(best-effort basis)으로 제공된다.

6.2 기술지원 내용은 본 약정에 따른 시스템 접속과 시스템 이용 및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제한되며, 해당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상업거래 처리에 관한 정보에의 접속 및 이용은 제외한다.

6.3 은행은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또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파기에 대하여 또는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제공받은 후 고객의 IT 시스템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스스로 보호하기로 한다.

6.4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의 일환으로, 은행은 특정 거래의 전송의 이행과 해당 거래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자동 거래 삭제

7.1 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은행의 상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서 수시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이에, 고객은 자신이 보관하고자 하는 관련 데이터를 출력하여 하드카피 형식으로 보관하거나 그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는 등 자신의 거래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과거 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항상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 정보의 회수를 위해 처리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제 8 조: 증거

8.1 은행은 자신의 법률 및 규제 의무와 내부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이 수행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유지한다.

8.2 당사자들은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상의 기록이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고객과의 거래들에 대한 확정적 증거가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9.1 고객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은 대체 절차의 사용을 전제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객 및 은행 간에 정보가 교환 및 전달될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9.2 고객은 시스템 접근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한 파일 및 문서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9.3 고객은 시스템의 세부명세, 시스템에서 제공된 서비스, 시스템 접속키, 약정문서,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문서 및 서비스와 시스템에 관련된 기타 정보의 보안과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오직 (a) 수권 대표자(authorised Representatives)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한하여 (b) 법규에서 강제하는 경우에(법규에 의하여 허가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라 은행이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먼저 은행에 통보) 한하여 제공한다.

9.4 시스템 접근권 제공의 종료 시,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자료, 아이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접근키, 데이터, 장비 및 문서가 즉시 은행에 반환되고 고객의 IT 시스템에서 삭제되도록 한다.

9.5 고객은 고객 또는 그 대표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실, 청구, 비용, 경비(전액보상 기준으로 소송비용 포함), 손해 및 기타 책임으로부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을 면책하기로 한다.

9.6 고객은 각 대표자가 본 조항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9.7 본 조항은 시스템 접속권 제공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 10 조: 이용 라이선스

10.1 고객이 약정문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은 시스템 및 시스템과 관련된 관련 문서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속적이고 제한적이며 취소가 가능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은 본 라이선스 또는 약정문서에 따라 주어진 권리에 대해 제 3 자에 대해 재사용권을 제공할 수 없다.

10.2 시스템,부속서비스, 시스템 접속키, 문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및 그와 관련된 정보 일체에 대한 저작권, 로고, 서비스표,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등록 여부 불문) 및 기타 자산, 이권, 소유권 및 권리 일체는 BNP Paribas 그룹 및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의단독적이고 독점적인 재산이다. 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저작권, 로고, 서비스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10.3 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시스템, 그에 의해 제공되는 부속서비스, 시스템 접속키 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의 일부를 설치 변경하거나 다운로드, 복제, 복사, 표시, 수정, 개량하거나 동 정보를 조정, 편집하거나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매체로 또는 절차를 사용하여 이를 전달할 수 없다. 고객은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지적재산 및/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기소를 포함하는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적 절차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고객은 고객 또는 그 대표자들이 약정문서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객이나 그 대표자들이 시스템을 사용 또는 접근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손해, 비용(전액보상 기준으로 소송비용 포함), 경비, 소송, 제재, 절차, 요구 및 기타 책임으로부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을 면책하기로 한다.

10.4 은행은 고객들에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술 및 기준에 따라 시스템, 제공되는 부속서비스 및 접속을 위한 기술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은행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시스템상에서 제공되는 통지 또는 은행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즉시 고객에게 알린다.

10.5 은행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또는 시스템의 부정사용의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접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11 조: 책임과 책무

11.1 고객은 은행이 합리적인 보안기준에 맞추어 취하는 보안대책에도 불구하고, (i) 다양한 특징과 용량을 가지는 네트워크상에서 운용되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때때로 하루 중 특정기간에 과부하 되고 (ii) 인터넷은 공개된 네트워크이므로 결국 인터넷상에서 전송된 정보는 오남용, 고객의 시스템 침범, 데이터, 시스템 프로그램과 파일 의 표절, 컴퓨터 바이러스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되지 아니하며 (iii) 시스템과 데이터를 바이러스 오염과 침입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11.2 은행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만, 시스템 또는 고객이 접속한 사이트에서의 정보, 문서와 거래의 보안과 비밀유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이 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제공한 정보에 있어서 그 내용의 보안과 신뢰성에 대하여 또는 동 정보를 기초로 취해진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3 은행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은행은 네트워크나 웹 호스팅 서비스의 중단, 정지, 해지 및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 결과, 고객은 인터넷과 시스템 사용에 관련된 위험을 인수한다. 또한, 은행은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 정지, 해지 및 오작동에 대하여 또는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화된 장비의 오작동이나 고객에 의한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이유로 인한 시스템 접속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1.4 은행은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위험 및 손실은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 고객과 그 대표자에 의한 시스템의 이용;
-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초래된 직접적, 부수적 혹은 결과적 손해 등에 의한 시스템 이용불능 및 서비스 접속의 제공 하자;

-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서비스, 파일 삭제나 전자통신의 지연, 오작동, 중단 혹은 정지 또는 해지;
- 고객이 시스템과 관련하여 요청하거나 시스템에 연결한 웹사이트와의 연결이나 연결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전송이나 품질, 데이터 전송망의 품질과 이용가능성 또는 서비스 중단, 또는 SWIFT, 통신선, 모뎀연결이나 기타 전송설비를 비롯한 전송방법과 전기통신수단의 봉쇄, 정지 또는 중단;
- 시스템을 통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된 모든 문서, 이메일, 거래와 정보(귀하의 제출 여부 불문)의 보안, 비밀유지, 정확성과 신뢰가능성과 그러한 문서, 이메일, 거래와 정보를 기초로 한 행위의 결과;
-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파기 또는 은행이 제공한 지원(제 6 조에 의하거나 기타) 으로부터 야기되는 고객의 IT 시스템이나 장비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
- 고객이 내린 원격지원지시(remote assistance instructions)의 해석 오류;
- 은행이 시스템에 관하여 제공하는 제 3 자의 소프트웨어;
- 시스템 접속키 분실 또는 안전보관 실패;
- 승인되지 않은 자에 의한 시스템 접속키의 사용;
- 고객이 거래나 지시 이전에 시스템 접속키 취소 실패.

11.5 고객은 시스템에 대하여 승인되지 않은 접속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표자에 의한 시스템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시스템의 파기 또는 손상을 야기시키는 고객 또는 그 대표자들의 행위 및 일반적으로 시스템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진다.

11.6 은행은 은행이 심각하고 증명된 오류에 대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오류를 고객이 인지한 날로부터 6 월의 기간 이내에 은행에 대한 법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1.7 고객은 고객 또는 대표자에 의한 시스템(또는 그 일부)의 오용 또는 약정문서의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은행을 상대로 하는 소송, 청구, 절차 또는 민원 및 은행의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전액보상 기준으로 소송비용 포함)로부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을 면책하기로 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12.1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불가항력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시스템의 중단, 해지 및 오작동에 대하여 또는 시스템 접속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2 불가항력사태의 발생 시 시스템에 의한 거래의 이행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중단된다. 동 불가항력 사태가 30 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최소 15 일 사전 서면 통지으로써 본 시스템에의 접속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2.3 불가항력 사태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 사건 또는 상황으로써 국내 불안, 테러공격, 자연재해, 은행 외부 요인들에 의해 자행된 방해행위 및 인터넷 네트워크의 작동 정지를 포함하는 준거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사태로 간주되는 사태이다.

제 13 조: 약정기간 - 해지 - 약정 해지의 결과

13.1 본 약정은 본 약정에 규정된 바대로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무기한의 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13.2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30 일간 사전 서면 통지한 후 30 일이 경과된 경우 본 약정과 본 약정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3.3 은행은 고객이 약정문서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함이 없이, 고객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 약정 및 관련 부속서비스는 고객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거나 고객에 대해 청산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13.4 시스템 접속권의 제공 해지시, 고객은 해지 후 1 개월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아이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접속키, 데이터, 장비와 문서를 은행에 반환하고 고객의 IT 시스템에서 삭제되도록 한다.

제 14 조: 양도

14.1 고객은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약정문서에 따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정보제공 동의

15.1 고객은 은행과 그 임직원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객, 등록된 계좌, 약정문서, 시스템과 서비스와 본 약정에서 예정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a) 은행의 본점, 기타 지점, 지역 사무소, 대표사무소 혹은 계열회사

(b)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나 당국 또는 초국가적 단체 또는 행정, 회계 혹은 사법기구, 법원과 재판부 또는 기타성질의 기관(각각의 경우 대한민국 내외);

(c) 은행의 잠재적인 양수인;

(d) (i) 시스템의 지원/유지보수, (ii) 테스트 수행과 (iii) 기타 유지보수 운영 수요에 대한 대리인, 제 3 자 서비스제공자 또는 기타 중개인

(e) 서비스 또는 시스템하에서 계획된 거래 이행이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 3 자은행 또는 기타 제 3 의 은행;

위 각각의 경우, 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정보제공 동의는 본 약정 및/또는 시스템 및/또는 부속서비스의 해지 이후에도 은행을 위하여 존속하며 효력을 갖는다. 본 약정에 따라 주어진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법률, 계약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은행에 부여된 기타 정보제공 동의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추가되는 것이다.

제 16 조: 준거법-분쟁해결

16.1 본 약정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본 약정으로 인하여 혹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본 약정의 존재, 유효성이나 해지에 관한 분쟁 포함)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 17 조: 언어

17.1 본 약정은 영어와 한글로 체결된다. 영문본과 한글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본에 따른다.**

제 18 조: 송달주소

18.1 본 약정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이로써 위에 기재된 사무소를 송달주소지로 선택한다. 또한, 고객이 대한민국 외에서 설립될 경우, 고객은 취소 불가능하게 Connexis 연결 신청양식에 기재된 회사를 본 약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한 송달대리인으로 임명하며 송달대리인이 고객에게 송달을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소송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고객은 송달대리인이 위 임명을 수락하도록 조치하고 은행에 수락에 대한 서면증거를 제공한다.